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80 | 2025.04.07 (2025.03.31.~2025.04.06)

※ Special Report :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주요 쟁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3.31~2025.04.06)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1. 탄핵심판 결과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달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11일 만입니다. 현재가 헌직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기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재는 비상계엄 선포,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발령,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 모두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2. 조기 대선 관련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대선일이 공고되어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4일까지 5월 24일 6월 3일 중 하루를 제21대 대선 선거일로 지정하게 되며,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큼니다.

일반 대선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한 날짜로 꼽히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정치권이 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과 사전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늦은 시점을 선거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큼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에도 2017년 3월 10일 현재의 인용 판결이 나온 후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에 조기 대선(제19대 대선)이 열렸습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되며, 6월 3일 본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됩니다.

3. 각 당 경선 관련

여야 각 당은 이르면 다음 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하기보다 며칠간의 냉각기를 두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추스르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일종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 사퇴시한(선거일 30일 전)을 감안하여, 경선 기간을 21~25일 정도로 하고 4월 말~5월 초 후보를 선출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 룰은 기존대로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당내 대선주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컷오프를 위한 예비경선 및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11일까지 중앙위원회 등을 개최해 경선 일정 및 후보 선출을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4월 12일경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컷오프 위한 예비경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약 3주간 4~5개 권역 별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통해 5월 첫째 주 대통령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현행 경선 룰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국민참여경선입니다. 당 일각에서 일반 국민 100% 참여 방식과 모든 야권에 문호를 개방하는 완전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이 제기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4. 각 당 대선공약 관련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60일간의 짧은 시간 내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정책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중도층 공약을 위한 공약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주가 하락, 계엄 정국 이후 치솟은 환율 문제, 영남 대형 산불 등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민생 관련 정책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실무진 차원의 공약팀을 구성해 밀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선거일 15일 전후로 각 당의 공약집이 발간되는데, 조기 대선의 경우 일정이 촉박하여 결국 총선공약에서 일부 보완·발전된 형태로 수정하거나 각 분야별 이해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후보의 아젠다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5. 대선 이후 정권 이양 관련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약 50일간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만약 6월 3일 대선이 치러져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7월 하순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이후 새 정부 국정과제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 국회 통과 여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각 부처 업무보고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될 전망이며, 이후 2025년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6. 향후 시사점

대선공약, 새 정부의 출범과 국정과제 등은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각 정당이 발표하는 대선공약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새 정부가 추진할 각종 정책 및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활용하고 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당 및 정부 부처 등에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 등 리스크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입법전략자문그룹은 분야별 변호사와 고문 등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대선공약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향후 정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과제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 범위 및 필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및 등록말소에 대한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권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 이행명령의 내용 및 세부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배상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조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청구를 제기하는 유형 등을 ‘괴롭힘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기업신용조사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사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사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사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

대규모유통업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매장임차인이 매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

상호·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9인)**」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31인)**」 ,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 ,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

보상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일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는 등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농해수위>에서 산불 관련 현안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산자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발표(법무부)..... 9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발족(국토교통부)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12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12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6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6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7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19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박주민의원 등 12인)..... 1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2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2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9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3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23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23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31인) 24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24

-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 25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9인) 25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의원 등 13인) 25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의원 등 18인) 26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0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0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2인) 28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6 (2025년 4월)
-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비로소 적용됩니다
- [공정거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9 (2025년 4월 1째주)
- [해외 규제] “미국 해방의 날”과 미국발 관세 쓰나미: 트럼프의 상호관세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발표 - 14개 광역지자체와 협업,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 시행 - 세계 최고 수준 최우수인재 대상 “탑티어(Top-Tier) 비자” 도입 -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관련 민관합동 심의를 거쳐 일반기능인력(E-7-3)·전문인력 비자(E-5) 범위 확대 및 주력산업 비자 요건 완화	2025-04-02
-----	--	------------

법무부는 '24.9.26.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과제이자 '25.3.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 **[유학 비자(D-2)]**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10개 광역지자체(4,42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에 대해서는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서울 제외), 서울,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부산, 인천, 강원, 전남)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
 -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시간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
 - 인천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1년→2년)하여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
- **[특정활동 비자(E-7)]**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4개 광역지자체(1,21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대구에 대해서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요건을 완화
 - 경기의 경우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으로서 한국어 능력 우수자 도입 시 학력 요건을 완화
 -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하여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요건을 완화
 - 울산과 경남이 제출한 조선업 분야 사업계획의 경우, 법무부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자체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 예정

(2) 탑티어(Top-Tier) 비자 본격 시행

-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 시행

*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이며 로봇, 방산 분야 추가 예정

-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
 -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
 - 해외 대학·기업뿐만 아니라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 또는 기업 출신도 대상에 해당
 -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전자적 방식의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고,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을 허용하는 등 전폭적인 혜택을 부여
 - 산업부의 “우수인재 자격인증(K-Tech Pas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탑티어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라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의 석사 이상 고급인재에게는 취업 확정 전이라도 구직(D-10)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 탐색기회를 확대

(3)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 법무부는 경제계 및 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6개 제안을 수용하였음

《'25년 상반기 반영 예정 비자·체류정책 제안》

소관부처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 조선업 용접공 일반기능인력(E-7-3) 경력요건 면제 ■ 자동차 부품제조원 일반기능인력(E-7-3) 직종 신설
보건복지부	■ 입양목적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신설
국토교통부	■ 판금·도장 정비원 일반기능인력(E-7-3) 직종 신설
해양수산부	■ 외국인 해기사 전문직업(E-5) 직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 베트남 소프트웨어(SW) 개발 전문인력 경력요건 완화

-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 및 탑티어 비자 제도는 광역권별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수요 반영 이민정책의 제도화,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우수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비자·체류정책 제언제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경제·산업계의 수요가 국민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발족

- 국토부·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 발족
-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마련

2025-04-01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였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힘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하였음

또한,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하여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함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R&D 성과물*을 실증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음

또한,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자율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낮다는데 공감하여,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6-01-01 시행 예정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2026-03-02 시행 예정
--------------------------	-----------------------------	------------------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5-10-02 시행 예정
---------------------------	---------------------------------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4-01 시행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함**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4-01 시행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2. 2. 24. 선고 2020헌가5 결정)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4-01 시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여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01. ~2025.05.12.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며, 기술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 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술심사 기한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설문조사 시행주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시 사전 통보를 신설하는 한편, 서류 보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 범위 및 필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영 제7조의2)
- ② 산업부장관이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영 제13조의2)
- ③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에 대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 (영 제13조의3)
- ④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수출에 대해 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6조의2)
- ⑤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 (영 제19조제3항및제4항)
- ⑥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8조의8, 별표2)
- ⑦ 수출 승인 자료 제출 협조 거부,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횟수별 부과기준 등을 정함 (영 별표1)
- ⑧ 침해신고를 받은 산업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신고한 내용이 침해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영 제20조제2항)

- ⑨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함 (영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 ⑩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1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도록 함 (영 제22조제3항 및 제4항)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전화: 044-203-4854\)](tel:044-203-485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4.01.
~2025.05.12.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3, 별지 제1-1호서식)
- ②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4, 별지 제1-2호서식)
- ③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및 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5, 별지 제1-3호서식)
- ④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6, 별지 제1-4호서식)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전화: 044-203-4854\)](tel:044-203-485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02.
~2025.05.12.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705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권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 이행명령의 내용 및 세부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에 따른 대기업등의 해당 업종·품목 참여제한 권고 시 그 내용을 구체화 (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 ②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 (안 제10조의3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신설)
- ③ 공표 이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명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마련 (안 제10조의3제4항·제5항 신설)
- ④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1억원으로 하되 고의성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 (안 제15조 신설, 별표 3)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tel:044-204-7934) (전화: 044-204-7934, 팩스: 044-204-7939)

국토교통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01.
~2025.05.12.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시행자의 승낙 없이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tel:044-201-3943) (전화: 044-201-3943, 팩스: 044-201-5594)

해양수산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4.03.
~2025.05.13.

국제해사기구가 새롭게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의 추가, 가스연료 사용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을 위한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의 지정 또는 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저인화점 연료 및 가스연료의 연료유 공급서양식, 연료유 견본 채취 및 보관의 면제,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 목록, 유조선의 손상시복원성의 기준,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양식 개정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추가 (안 제6조제2항제2호의4)
 -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지중해 배출규제해역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에 추가함

② 가스연료 사용선박의 사용중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 지정 등의 의무 면제 (안 제34조제6항제1호)

-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사용 중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 지정 등의 의무를 면제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mailto:marine@shin&kim.com) (전화: 044-200-5835, 팩스: 044-200-584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2025-04-02 발의
-------	-------------------------------------	---------------

2024년 누적 체불임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총 28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임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처럼 형사와 민사사건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1·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박주민의원 등 12인)	2025-04-03 발의
---------	-----------------------------------	---------------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정부, 단체 및 개인)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국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소송 유형은 국가가 공적 이슈에 대하여 진행된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조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그리고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청구를 제기하는 유형이 있음. 이러한 소송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시위·집회 참가자, 공익신고자, 노동자 및 노동조합 등이 자신의 권리와 공익을 위해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이를 제한하려면 이러한 목적의 소송을 유형화하고 가압류청구 등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제한 역시 요구됨. 또한, 형식적인 승소 가능성 외에 소송의 ‘괴롭힘’ 목적이 확인될 경우에 조기종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이러한 실질적 목적을 가진 소송을 ‘괴롭힘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임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2025-04-01 발의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2025-04-01 발의

현행법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 등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여 분담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 납품업자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2025-04-02 발의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을 받아 납품·입점업체에 40일~60일까지 정산을 지연시키고 대금을 임의로 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어려움에 따라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정당한 수익 취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자는 대기업 매장임차인에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공받아 매출액을 확인한 후 매출액에 연동되는 판매수수료만 지급받고 있음. 반면 중소상인 매장임차인에게는 판매수수료 산정에 필요하다는 매출대금을 전부 입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40여일동안 운용하다가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고 있음. 이처럼 판매대금 정산방식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부당한 차별이 존재함

더욱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규모유통업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현금 운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선입금한 매출대금을 판매수수료 정산 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소상인 매장임차인들은 매출대금의 선입금을 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됨. 「민법」 제536조제2항은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상인 매장임차인이 이러한 항변을 원용하여 매출대금 선입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임. 그래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매장임차인이 매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2025-04-02 발의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게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9조)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2025-04-04 발의

외부감사제도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2018년 11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시행되었음.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제3항),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항)

그런데 현행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등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요건,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무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안내하고 있는 실정임. 동 가이드라인은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계부정 조사는 통상 횡령과 배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력을 갖춘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공동조사가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3항 및 제8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9인)

2025-04-02 발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 제100조의33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025-03-27 발의

현행법은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이전에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었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건축물이 더 이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처럼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임 (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2025-04-04 발의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12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2025-03-31 발의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22조제5항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31인)

2025-03-31 발의

자은 국제 분쟁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물류비용과 무역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북극 지역에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의 바닷길이 열리고 있어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러시아·캐나다·핀란드·노르웨이 등에서 북극 관련 전략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로 가입 및 승격하며 북극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과 글로벌 교류 기회를 얻었음에도 현 정부는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전략 마련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2025-03-31 발의

최근 첨단기술과 연계한 수직농장 등이 등장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2·3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등 농업인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중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개량시설 등 일부만 농지 위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농촌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촉진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집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양한 형태의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고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

2025-04-01 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및 소비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식량 보호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9인)

2025-04-0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
인)

2025-04-02 발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타사업자와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함

한편 `25년 이후 평균요금제 대상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직수입 발전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 이후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안 제2조제9호 개정,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0조의5제4항 개정, 제10조의6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18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8
인)

2025-04-03 발의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 등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인근 수요처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발전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에너지 활용률이 높음. 또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같은 미활용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아울러, 대규모 송전선로 확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부지 내에 안정적으로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음

해외의 경우 현재 EU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저감·송전망 혼잡 완화 등 경제적 편익을 인정하고 집단에너지에 대한 보급 및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 국내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지난 1991년이 제정돼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고,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분산자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등)**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5-03-31 발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3항제2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5-03-31 발의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이 병행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규정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제14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2025-04-01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소멸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쌓아놓고 근로자는 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미사용 보상휴가를 퇴직 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7조)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025-03-31 발의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 허용 가능 시설에 실내외 체육시설, 야영장, 도서관 등의 여가 시설은 포함된 반면에 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복지관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대나 부지 매입비용의 부담으로 도심 내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가능한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2인)

2025-04-01 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각각 70%로 완화되었음(2025년 5월 시행)

따라서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2025-04-01 발의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2항제8호,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제4호, 제62조제5항·제6항, 제89조제5호의2·제5호의4,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및 제62조제4항, 제91조제2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제91조제3항제12호의2·제14호·제16호 개정)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농해수위	전체회의	4/10(목) 10:00	- 산불 관련 현안보고
산자위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	4/8(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4/9(수) 10:00	- 법안 의결, 현안 질의(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현안 관련)
국토위	전체회의	4/9(수) 10:00	- 법안 상정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4/8(화) 10:00	-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7(월) 10:00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 :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년·정성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4/7(월) 14:00	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신장식·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4/8(화) 10:00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강승규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4/9(수) 10:00	[2025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4차 포럼] 트럼프 2.0 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책	주호영·윤호중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4/9(수) 14:00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 "기후위기 시대" 제도 개선 국회포럼	염태영·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4/10(목) 14:00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	염태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4/11(금) 10:00	주택 난방 탈탄소화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김성환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 담회의실
자료집 등	4/7(월)	「Data+」 제5호(2025-5호) 발간	국회도서관	
	4/9(수)	「금주의 서평」 제723호(2025-14호) 발간		
	4/7(월)	「2025년 대한민국 조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4/10(목)	「NABO Focus」 제102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3/31(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6호(2025-6호)	국회도서관	
	4/2(수)	「금주의 서평」 제722호(2025-13호)		
	3/31(월)	「2025년 NABO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3/31(월)	「2025년 대한민국 재정」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3.31.~2025.04.06.)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1(화)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6 (2025년 4월)
4/2(수)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비로소 적용됩니다
4/3(목)	공정거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4/4(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9 (2025년 4월 1째주)
4/4(금)	해외 규제	“미국 해방의 날”과 미국발 관세 쓰나미: 트럼프의 상호관세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